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윤후덕·조 국·박상혁

정성호 · 복기왕 · 김주영

허 영・강유정・이훈기

주철현 · 정진욱 · 위성락

김승원 · 박홍배 · 오세희

박지원 • 이기헌 • 박해철

박범계 · 김성회 · 정준호

김동아 · 홍기원 · 김성환

손명수 · 박희승 · 조정식

조계원 · 차지호 · 김영배

김남근 • 안도걸 • 윤건영

임호선 · 양부남 · 이원택

이성유 • 이용우 • 한정애

임미애 · 이광희 · 정일영

황명선 · 김영환 · 한준호

박지혜 · 이연희 · 김 유

조인철 · 최민희 · 이정헌

김태년 - 김 현 - 이학영

박선원 • 이재정 • 전진숙

문금주・박 정・김용민

황정아 • 박용갑 의원

(62) 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해당 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음.

이에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제24조의2에 따른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 위원회에 미리 소명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① 제24조제1항제3호의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두다.
 - ②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 중 10인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2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 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전단등 살포의 착수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금지) 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				
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				
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u>다만 제3호의 경</u>			
	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			
	생시키지 않음을 제24조의2에			
	따른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			
	원회에 미리 소명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4조의2(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			
	위원회) ① 제24조제1항제3호			
	의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			
	<u>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u>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접경지			
	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			

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 회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 중 10인 이상 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의 주민으로서 국회의 추천 을 받은 자
- ④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 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 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제1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호 및 제2호를-----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서 신설>

	•	

②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 회의 승인 없이 제24조제1항제 3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 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 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 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